

이사회운영규정

1 - 4

이사회 운영 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 및 이사는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
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공장추진단 이사, 경영기획담당 이사 및 그 외 이사 (등기이사에 한함)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감사의 출석등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제7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이사 또는 감사가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는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표결을 통하여 결정한다.
- ②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사후승인)

-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담당이사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집행할 수 있다. 단, 다음 이사회에서 경위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가 긴급 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.

제12조 (부의절차)

- ①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부의요청서와 부의안건을 본사 총무팀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본사 총무팀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 회일을 정하여 일시, 장소, 부의 사항을 회일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1.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할 의안
 2. 영업보고서의 승인
 3.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및 정관 제43조 제4항의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② 경영에 관한 사항
 1. 신규 사업

2. 자금 계획 및 예산 운용
 3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4. 공동대표의 결정
 5. 대표이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표(대행)할 이사의 순서
 6.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7. 본점, 공장, 해외사무소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8. 비등기 임원 선임 및 보수(월정보수, 성과급, 퇴직금)에 관한 사항
 9. 임원대우고문 및 임원대우 촉탁 임명 승인
 10.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11.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12.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, 준법통제기준 점검 결과 보고
- ③ 재무에 관한 사항
1. 신규출자 및 출자회사 증자에 관한 사항
 2. 결손의 처분
 3. 신주의 발행
 4. 사채,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5. 준비금의 자본 전입
 6.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자금차입 또는 기타 중요한 자금 차입
 7.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 인수 또는 면제 등 기업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
 8. 자본금 5%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
 9. 자산 5%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/처분 또는 중요한 고정자산 취득/처분
 10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11. 자기주식의 소각
- ④ 이사 등에 관한 사항
1.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2.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⑤ 기타
1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
 2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4조 (보고사항)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
②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5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6조 (관계인의 출석)

① 회의에 부의된 의안 설명은 해당 담당 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담당 이사가 유고시에는 해당 부(실)장, 팀장 또는 기타 의장이 지명한 자가 설명한다.

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이사회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8조 (간 사)

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본사 총무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1998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본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